

제14장
지식재산권

제1절
일반규정

제14.1조
원칙 및 목적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발상, 기술 및 창의적인 활동의 확산을 통하여 국제 무역 및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촉진, 그리고
- 나.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에 대하여 지식재산의 권리자와 사용자를 위한 명확성의 증진

2.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와 지식재산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간 균형을 달성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제14.2조
국제 협정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¹과 그들이 양 당사자인 지식재산에 관한 그 밖의 모든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2001년 11월 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제14.3조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4.4조

내국민 대우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3 조 및 제 5 조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식재산의 보호 및 향유²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제14.5조

투명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또는 집행에 관한 법, 규정 및 절차가 명문화되고 공표³되거나, 공표가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² 이 장의 목적상, “보호”는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이용 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포함한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법, 규정 또는 절차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제14.5조의 공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제2절

상표

제14.6조

상표 보호

1. 한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기업들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지, 또는 표지의 조합은 상표를 구성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증명 표장, 단체 표장 및 서비스 표장을 포함한 표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⁴
3.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그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⁵
4.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모든 제 3 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선행 권리를 저해하지 않으며 양 당사국이 사용에 기반하여 권리를 이용 가능하게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5.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 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증명 표장 또는 단체 표장이 보호되는 한, 이를 자국의 법에서 별도의 범주로 대우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양해된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소리 표장에 대하여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4.7조

예외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14.8조

유명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 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 유명 상표 목록에 등재되어 있을 것 또는 유명 상표로 사전 인정되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 어떠한 상표가 당사국에서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표의 홍보 결과로 얻어진 관련 당사국에서의 지명도를 포함하여 관련 분야에서 대중의 상표에 대한 지명도를 고려한다.
3. 이 조에 따른 보호는 등록 상표가 각 당사국에서 유명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 국한되지 않는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등록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등록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선행 유명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⁶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항의 “유명 상표”라는 용어는 미등록 유명 상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4.9조

상표의 등록 및 출원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 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한 통지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요건. 이 경우 통지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 나. 출원인이 상표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최종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
 - 다. 어떠한 인도 상표 등록 전에 상표 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 및 이해당사자가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의 취소나 무효화를 구할 수 있는 기회
 - 라. 악의로 등록된 상표의 취소나 무효화를 위한 행위. 각 당사국은 해당 행위는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한다. 그리고
 - 마. 이의제기 및 취소절차에서의 결정은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 서면 결정은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상표의 전자적 출원과 전자적 처리,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제도를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⁷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절은 당사국이 그러한 정보를 그 당사국의 자국 언어 외의 언어로 공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4.10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1. 이 협정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2. 각 당사국은 지리적 표시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제3절 특허

제14.11조 특허 가능 대상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만 한다.⁸ 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특허 대상⁹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⁸ 당사국은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각각 “비자명성” 및 “유용성”과 동의어로 취급할 수 있다.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7조와 합치되는 특허 대상에 대한 예외를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제14.12조

예외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14.13조

공지 예외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가. 공지가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한 경우, 그리고

나. 공지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전 12 개월 내에 발생한 경우

제14.14조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

각 당사국은 특허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¹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¹¹

제14.15조 우선 심사

1. 각 당사국은 합리적 근거와 절차적인 요건에 따라, 출원 공개 후 출원인 외의 인에 의하여 청구된 발명이 실시되는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 출원인이 우선심사요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우선 심사제도의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심사처리기간의 단축, 또는
- 나. 우선 심사를 위한 절차적인 요건의 간소화

제14.16조 절차의 간소화

1. 당사국은 우선권이 주장된 특허에 대한 선출원이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그 선출원에 대한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우선권이 주장된 특허에 대한 선출원의 번역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¹⁰ 이 조의 목적상, “의견진술”이란 제출된 출원에 대한 출원인의 서면 통지를 말한다.

¹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정, 정정 및 의견진술이 허용되는 상황의 범위는 자국의 법에 따라 각국 간에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4절
식물품종 보호

제14.17조
식물품종 보호

양 당사국은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91년)에 따른 그들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제5절
디자인

제14.18조
디자인 보호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서 하나의 물품 또는 물품의 일부에 대한 산업 디자인에 대하여 최소 15년의 보호 기간 동안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2.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는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않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4.19조
예외

각 당사국은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6절 부정경쟁 및 미공개 정보

제14.20조 부정경쟁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정경쟁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특히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 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이나 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성격의 모든 행위
- 나.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이나 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신용을 해하게 하는 성격의 거래상의 허위 주장, 또는
- 다. 상품의 성질, 제조방법, 특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수량에 대하여 공증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거래상의 표시 또는 주장

제14.21조 미공개 정보

양 당사국은 미공개 정보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39 조에 따라 보호한다.

제7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12,13}

제14.22조 부여되는 보호

각 당사국은 다음 협약에 규정된 유보 및 예외를 포함하여 다음을 준수한다.

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1961)(로마협약)의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그리고

나.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년)(베른협약)의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제14.23조 복제권

각 당사국은, 저작자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자신의 저작물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¹⁴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4.24조 공중에 이용을 제공할 권리

¹² 제 14.25 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목적상,

가.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라는 용어는 또한 모든 권리승계인을 지칭한다. 그리고 나. “저작자”라는 용어는 또한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고용인과 같이 저작물의 첫 번째 저작권 소유자로 간주될 모든 실체를 지칭한다.

¹³ 이 장의 목적상, “실연”이란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말한다.

¹⁴ 이 장의 목적상,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는 배타적 권리의 지침이다.

각 당사국은 저작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자신의 저작물 및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저작물 및 음반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제14.25조

보호 기간

1. 각 당사국은, 저작물의 보호 기간을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보호 기간이 실연이 이루어진 때부터 70년 이상이 될 것을 규정한다.

제14.26조

무방식주의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규정된 저작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향유와 행사에 어떠한 형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제14.27조

계약에 의한 이전

각 당사국은 저작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저작물 또는 음반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인이 그 권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4.28조

제한 및 예외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되지 않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는 특정한 경우에, 이 절에서 언급된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제한 및 예외를 자국의 법령에 규정할 수 있다.

제14.29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 송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양 당사국 간 콘텐츠의 더욱 용이한 접근 및 전달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 각자의 정수단체 간의 약정 체결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정수단체의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합리화를 달성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4.30조 실연자의 권리

로마협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실연자에게 제공되는 보호가 다음에 대한 금지의 가능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 가. 방송 또는 공중 전달에 사용된 실연 그 자체가 이미 방송된 실연이거나 고정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실연을 동의 없이 방송하고 공중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 나. 자신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동의 없이 고정하는 것

제8절 집행

제1관
일반 의무

제14.31조
지식재산권 관련 집행 관행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 가.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사법결정과 행정판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정과 판정이 기초로 하는 관련 사실의 조사결과 및 사유나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 그리고
- 나. 각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결정과 판정이 공표¹⁵ 되거나, 공표가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중과 권리자가 이를 인지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자국의 언어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제14.32조
인터넷상 침해에 대한 조치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의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한다.¹⁶

제2관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¹⁵ 당사국은 그 결정 또는 판정을 인터넷상에 공개함으로써 공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¹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는 법령, 지침, 정책, 인식 캠페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4.33조 자격 있는 권리자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¹⁷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14.34조 손해배상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자국의 사법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다음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1)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 또는

2)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위조의 경우,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1)목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될 수 있다.

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 자국의 사법당국은 특히 시장가격, 권리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제14.35조

¹⁷ 이 조의 목적상, “권리자”는 어느 지식재산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 및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리의 연합 또는 협회를 포함한다.

법정손해배상액

민사 사법절차에서,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각 당사국은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제14.36조

법적 비용

각 당사국의 사법당국은 또한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적절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제14.37조

압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와 관련된 침해혐의가 있는 상품, 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위조에 대해서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¹⁸

제14.38조

폐기률 포함한 그 밖의 구제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위하여, 양 당사국의 사법당국은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상품을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폐기하거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에게 초래되는 피해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양 당사국의 사법당국은 또한 그 지배적인 용도가 침해

¹⁸ 당사국은 이 의무를 잠정조치를 통하여 완수할 수 있다.

상품의 생성에 있었던 재료 및 도구를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요청을 검토하는 데에,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제 및 제 3 자의 이익 간의 비례성에 대한 필요가 고려된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제14.39조 침해 관련 정보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증거 수집의 목적상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자국의 사법당국¹⁹이 당사자에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법당국 또는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4.40조 비밀유지명령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의 사법당국이 내린 유효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법당국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당국이 그 절차와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4.41조

¹⁹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침해 수입품과 수출의 금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특히 침해 수입품의 상거래로의 유입과 침해 상품의 수출을 금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4.42조

대체적 분쟁해결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43조

잠정조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지식재산권 침해발생의 방지와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상품이 당사국의 관할권 내 상거래로 유입되는 것의 방지, 그리고

나. 침해의 혐의에 대한 관련 증거의 보전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적절한 경우, 특히 자연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가 훼손될 것을 입증할 만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잠정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3. 사법당국은 신청인이 권리자이며,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했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사법당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3관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제14.44조 국경조치의 범위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3 부제 4 절의 규정에 따라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²⁰의 수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진 권리자가 국경조치 절차가 적용되는 당사국의 권한 있는 행정 또는 사법당국에 그러한 상품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출되는 것을 그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정지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채택한다. 당사국은 이 절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그 밖의 침해와 관련된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그 영역으로부터 수출하기로 되어 있는 침해상품의 관세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에 관하여 상응한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²¹

제14.45조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

²⁰ 이 장의 목적상,

- 가. “**위조된 상표 상품**”이란 포장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되지 않는 상표를 허락 없이 부착하여, 수입국의 법에 따라 해당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 나.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이란 권리자 또는 제작 국가에서 권리자가 정당하게 허락한 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복제물로, 그 복제가 국경조치 절차가 적용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구성하였을 물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모든 상품을 말한다.

²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절에 규정된 절차를 다른 국가의 권리자에 의하여 또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 국가의 시장에 판매된 상품에 적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양해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절에서 규정한 절차를 요청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제14.46조

정보의 공개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상품을 정지하거나 압수한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자국법에 따라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권리자에게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리고, 그 상품의 견본을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14.47조

최소허용수준 수입

각 당사국은 여행자의 개인적 휴대품에 포함되거나 소량의 택송 물품으로서 비상업적 성격의 소량 물품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4.48조

폐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 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고,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4관 형사절차와 구제

제14.49조 형사절차와 처벌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고, 저작인접권 침해를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다.²²

제14.50조 처벌, 압수, 몰수 및 폐기

제 14.49 조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 나. 적절한 경우, 이용 가능한 구제는 또한 침해 상품 및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주로 사용된 모든 재료 및 도구의 압수, 몰수 및 폐기를 포함한다. 그리고
- 다. 자국의 당국은 이 장에 기술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인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고소 없이 직권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제9절 그 밖의 규정

²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화관에서의 상영으로부터, 그 거래를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의 무단 복사는 이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은 “복사”라는 용어를 “복제”와 동의어로 취급할 수 있다.

제 14.51 조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유선 방송의 보호

각 당사국은 고의적인 행위를 통하여 유선 또는 위성 방송의 구독 서비스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한다.

제10절
협력 및 정보 교환

제14.52조
협력 및 정보 교환

1.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의 기존의 협력 형태에 추가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이 장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권리의 집행
- 나. 국내 및 국제 지식재산 정책의 개발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그리고
- 다. 다자 지식재산 협정의 이행에서의 그리고 산업재산 등록 제도와 관련한 경험의 교환

2.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 활동 및 정보의 교환은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조건으로 하며, 양 당사국 간에 상호 합의되는 조건에 따른다.

제11절

지식재산권위원회

제14.53조

지식재산권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 목적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의 검토 및 점검
 - 나.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원활하게 할 방안의 토의
 - 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 제도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
 - 라. 공동위원회가 위임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 수행, 그리고
 - 마. 이 장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노력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년 회합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알린다.²³

제14.54조

검토

²³ 회의는 가상의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3년차부터 다음의 사안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데 합의한다.

가. 미등록 디자인에 부여되는 보호

나. 비밀 디자인

다. 디자인 등록 요건

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그리고

마. 집행